

조은금강병원, 좋은삼선병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전국 18곳으로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친화 장비 갖추고, 이동 지원과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일(토)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이다.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장애인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계속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조은금강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요
2. 좋은삼선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요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 개요
4. 「장애인건강권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장혜경 (044-202-3198)

□ **건강검진기관 개요**

- (기 관 명)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이사장: 허명철)
- (운영인력) 36명(의사 9명(소화기내과5, 직업환경의학과2, 치과1, 부인과1),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9명, 방사선사 6명, 임상병리사 6명, 사무원 2명)
- (운영장소) 건강검진센터(본관) 2층 건강증진센터
 - (시설규모) 검사실 14실(위내시경2, 초음파, 심전도, 부인과, 폐기능3, 청력3, 구강, 채혈, 혈압 및 신체계측), 촬영실 4실(흉부, 유방, CT, MRI)
 - (검진장비) 기초검사 6종(신장계, 체중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혈압계, 혈액분석기), 필수장비 9종(휠체어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비디오, 대화용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기교환대, 이동형 침대), 기타장비 12종(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폐기능, 청력, 골밀도, 일반방사선촬영, CT, 유방촬영, MRI, 치과용진료대, 자궁초음파장비)
- (검진서비스) 국가건강검진(일반·암), 학생검진, 특수검진

□ **현장 사진**



조은금강병원 전경



조은금강병원 장애인 검진 접수대



조은금강병원 신체계측실



조은금강병원 장애인 검진 예약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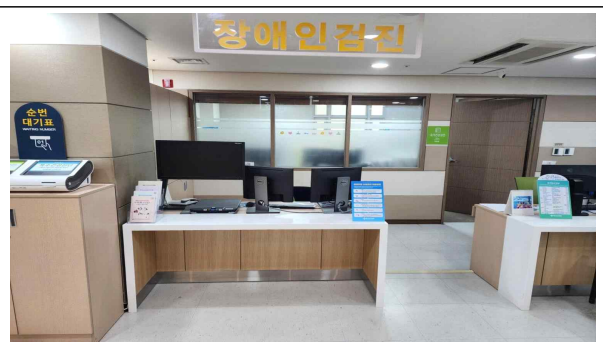
□ **건강검진기관 개요**

- (기 관 명) 좋은삼선병원 (병원장:박성우)
- (운영인력) 31명(의사 16명(가정의학과1, 소화기내과5, 직업환경의학과3, 영상의학과3, 산부인과2, 치과2),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행정 4명)
- (운영장소) 건강증진센터(신관) 5층
 - (시설규모) 검사실 18실(위내시경6, 초음파3, 심전도, 부인과2, 폐기능, 청력2, 구강, 채혈, 신체계측), 촬영실 7실(흉부2, 유방, CT2, MRI2)
 - (검진장비) 기초검사 6종(신장·체중계/허리둘레/시력검사표/청력계/혈압계/혈액 및 소변분석기), 필수장비 9종(휠체어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비디오, 대화용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기타장비 10종(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폐기능, 청력, 골밀도, 일반방사선촬영, CT, 유방촬영, MRI)
- (검진서비스) 국가건강검진(일반·암), 학생검진, 특수검진

□ **현장 사진**



좋은삼선병원 검진센터 주출입구



좋은삼선병원 장애인 전용 접수대



좋은삼선병원 여성존 검사실



좋은삼선병원 장애인 검진 예약 홈페이지

붙임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지정기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시설: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과 별도기준 1~3개 적용 ①주차구역 ②매개공간 접근성 ③주출입구 ④안내표지 등 ⑤승강기 ⑥경사로 ⑦계단 ⑧접수대 ⑨내부경로 ⑩화장실 ⑪경보·피난설비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회전 공간, 바닥, 손잡이, 수납 공간, 경보장치, 호출장치 등 규정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을 두되, 수어통역사(위탁 가능) 1명 이상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종: ①휠체어체중계 ②영상확대비디오 ③점자프린터 ④대화용 장치 ⑤장애특화 신장계 ⑥특수휠체어 ⑦이동식 전동리프트 ⑧성인기저귀 교환대 ⑨이동형침대

- (지정현황) 총 107개소(18개소 운영 중)
 - '18~'23년 사업수행기관 공모·지정기관 : 30개소(18개소 운영 중)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서울	서울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국립재활원*		안동의료원*
부산	부산의료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산성모병원*		안동병원
	연제일신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좋은삼선병원*		조은금강병원*
인천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국제바로병원		진주고려병원
광주	우리동네의원		밀양병원
대전	대청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목포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		강진의료원
강원	원주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제주	중앙병원*
충남	천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24.5월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시한 기관에 해당됨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당연지정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 **77개소(미운영)**
 -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12.14.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 '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검진가산수가** (운영 개시 후) 지원

* 재정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범위내 지원 ** 중증장애인 1인당 62,920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62호)]

-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